

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2. 6. .
제출자 : 하남시장

1. 제안이유

- 하남시의 관광진흥과 관광기념품의 다양화를 위해 관광 기념품의 개발·관리 및 판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정의, 기념품 공모전 등, 기념품 지정(안 제1조 ~ 안 제4조, 안 별표1)
- 나. 관광기념품 지정위원회 운영(안 제5조 ~ 안 제10조)
- 다. 관광기념품 지정 관련(안 제11조 ~ 안 제13조)
- 라. 관광기념품 직영 및 위탁판매(안 제14조 ~ 안 제15조)
- 마. 관광기념품 관리 및 판매 운영 등(안 제16조 ~ 제22조, 안 별표2)

3. 제정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관광진흥법」 제48조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예산수반 사항 : 덧붙임(비용추계서)

7. 입법예고 결과

가. 예고기간 : 2022. 05. 09. ~ 2022. 05. 29. [20일간]

나. 의견내용 : 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 의견없음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개선의견

현 행	개선의견
<p>별지 제2호 서식 「관광기념품 지정 및 판매 계약서」 제2조(지정기간) 시와 업체는 제13조(지정 취소 등)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정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 단, <u>만료 후 상호간의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연장된 것으로 본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 단서의 경우 ‘만료 후 상호간의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연장된 것으로 본다.’ 라고 하였음 - 그러나 기념품 지정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기념품 지정업체에 부담을 줄 수 있음 - 또한 지정기간 만료 전에 연장에 관한 의사를 상호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간 만료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 따라서 해당 내용의 단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검토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 제2호 서식 중 제2조 단서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선권고함 <p style="text-align: center;"><개선안></p> <p>제2조(지정기간) ----- ----. 단, <u>계약만료일까지 상호간의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지정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u></p>

9. 참고사항 : 덧붙임

○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10. 관련부서 :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 관광진흥과 관광기념품의 다양화를 위해 관광기념품의 개발·관리 및 판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기념품” (이하 “기념품” 이라 한다)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홍보할 목적으로 하남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지정하거나 제작·구입하여 판매하는 기념품을 말한다.
2. “기념품 직영판매점” (이하 “직영판매점” 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판매점을 말한다.
3. “기념품 위탁판매점” (이하 “위탁판매점” 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위탁 판매계약을 통해 지정한 판매점을 말한다.

제3조(기념품 공모전 등)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관광객 방문 활성화와 하남시 관광진흥을 위하여 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하고, 이에 따른 기념품 제작 및 판매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 개최 시 필요하면 공모자격, 작품 접수 및 심사, 시상금 규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④ 기념품 제작 및 판매관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기념품 공모전 운영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4조(기념품 지정) ① 시장은 기념품 다양화를 위하여 기념품 공모전과는 별도로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이 개발 및 제작하는 기념품을 하남시 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품의 지정 요건 및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기념품 지정위원회

제5조(기념품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념품 공모전 운영 및 하남시 기념품 지정 등에 필요한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하남시 관광기념품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념품 공모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기념품 제작 및 판매계획에 관한 사항
3. 하남시 기념품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4. 기념품 중 판매가 저조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상품 제외, 폐기 등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5. 기념품 특별할인 판매 행사 결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의 2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념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

나. 기념품관련 위탁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인의 소속 직원

다. 관광학과, 디자인학과 등 관련분야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라. 공예, 디자인, 마케팅 등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기념품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협회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과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4. 제7조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3장 기념품 지정 등

제11조(기념품 지정 신청 및 고시 등) ① 제4조에 따라 하남시 기념품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념품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4조제2항의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

에 적합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남시 기념품으로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하남시 기념품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하남시 기념품으로 지정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계약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해당 기념품의 판매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한 기념품에 대하여 해당 기념품의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개선 또는 시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해당 기념품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5.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념품 지정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하남시 기념품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념품 지정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판매 및 홍보 등 제작자와 맺은 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기념품의 직영 및 위탁판매

제14조(기념품 직영 판매) ① 시장은 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영판매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관광객 방문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주변 시설을 중심으로 시의 관광 홍보 및 기념품의 적극적인 판매가 가능한 장소인 경우
2.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직영판매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직영판매점의 관리·운영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기념품 판매점 지정 등) ① 시장은 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판매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기념품 위탁판매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에 한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위탁판매점의 지정을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위탁 판매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 취소 등 위탁판매점 운영의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폐업하는 경우(별지 제5호 서식)

제5장 기념품의 관리 및 판매운영 등

제16조(기념품 교환 및 환불) ① 위탁판매점은 납품된 물품의 파·훼손 등 사유로 시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념품 수령일부 터 10일 이내 물품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판매점과 소비자와의 분쟁에 대하여 기타 세부사항은 「소비자기본 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를 따른다.

제17조(관촉활동 등) ① 시는 기념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촉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관촉활동에 필요한 기념품(이하 “관촉용 기념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관촉활동 시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고 관촉용 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관촉용 기념품 수불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기념품 가격 및 판매수입금 관리) ① 시는 기념품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의 공급(제작)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작단가, 판매가격 등을 정한다.

② 판매점은 1개월 단위로 익월 5일까지 시가 지정한 방법(기념품 판매 계좌 입금)에 의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는 매달 판매점의 판매수입금을 합산해 시 세외수입계좌에 납입한다.

제19조(기념품 보관관리 및 대장작성 등) ① 판매점은 기념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영판매점은 기념품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매월 판매용 기념품 관리 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수불사항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③ 직영판매점은 기념품의 정확한 판매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1회 재고

조사를 실시하고 15일 이내에 결과를 시에 보고해야 한다.

④ 판매점이 자체 재고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시와 공동으로 재고조사를 할 수 있다.

제20조(기념품의 폐기) ① 시는 보관·전시·진열 중에 파손 또는 변질 등으로 인하여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기념품은 폐기할 수 있다.

② 기념품의 폐기에 대하여는 「하남시 물품관리 조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1조(위탁) 기념품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념품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문화체육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 · 성명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팀장 직위 · 성명	문화재관광팀장 송정재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송정재 (790-5857)

[별표 1]

하남시 관광기념품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제4조 관련)

1. “하남시 관광기념품” 지정 분야

	분 야	내 용
1	전통기념품	한국적 고유의 색채를 보유하고 이성산성 등 하남의 전통문화 유산을 계승하는 기념품
2	현대기념품	현대적 디자인의 실용성이 강조된 기념품

2. “하남시 관광기념품” 지정 요건

- 하남을 연상시킬 수 있는 실용적이고 상품성이 우수한 관광기념품
- 하남의 유·무형 자산을 모티브로 현대적 디자인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
- 민·공예품, 공산품, 녹색상품, 패션잡화류(문구, 팬시, 의류, 인형), 생활용품 등 국내외 관광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모든 관광상품
 - ※ 단 시민의 건강과 관련되어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농·수·축·임산물 가공품 등 먹거리는 제외
- 양산 가능한 제품만을 대상
- 가격이 적정하고, 보관·운반이 용이하여 관광기념품으로의 상품화가 가능한 제품
 - ☞ 가격의 적정 수준 : 시중유사제품 판매가격과 비슷하여 소비자기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제작원가 10만원 이상의 고가상품 제한
 - ☞ 개별 제품 크기 가로30cm x 세로30cm x 높이30cm 이내

3. 지정 허가 취소 대상

- 국내외에 이미 상품화된 작품의 유사작품 및 모조품
- 작품설명서, 가격표 및 포장 등이 세트화 되지 않은 작품
- 타 공모전 등에 출품하여 입상한 작품
- 로고, 엠블럼, 캐릭터 등 사용으로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제품
- 지정 허가 후에도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밝혀질 경우 지정 허가 취소

4. 하남시 관광기념품 지정 심사기준

- 실용성 및 홍보성에 대한 심사 비중 제고
- 재적위원 수 3분의 2 이상이 배점 100점 중 80점 이상을 책정할 경우 해당상품을 하남시 관광기념품으로 지정

심사항목	배 점		평 가 사 항
	배 점	실 점	
상 징 성	2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남의 상징, 도시브랜드 이미지 구현성 ▷ 하남의 지역적, 문화적 특성 등 반영 여부
시 장 성	50	15	대중성(상품 트렌드, 판매 가능성)
		15	가격 적정성
		20	실용성(상품의 기능성, 휴대성 및 활용가능성)
심 미 성	10	10	구매동기를 유발하는 조형성
창 의 성	10	10	독창성 및 아이디어의 참신성
작품완성도	10	10	내구성 및 마감처리의 정교성
합 계	100		

[별표 2]

관측활동 시 기념품 무상제공의 범위(제17조 관련)

1. 설명회, 박람회 등에 참석하는 관광객 등의 관계자
2. 관광 업무 등 시 전반 업무추진을 위하여 초청한 국내·외빈
3. 방송매체 홍보지원
4. 위탁판매점에 관측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진열대용)
5. 관광 팸투어 초청 이벤트, 관광 홈페이지 및 SNS 채널 등을 통한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
6.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급대상은 행사관계자로 제한하되 제공대상 명단을 첨부한다.

제품설명 및 상품화실적

제품명(국문)	
제품명(영문)	
제품 설명	※ 작품의 소개 자료로 활용할 내용이오니 작가의 제작의도, 작품의 특징, 참고사항, 작품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등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화 실적 (상품화 실적이 있을 경우)	○ 제품 생산현황
	- 생산주체 및 방식 : 직접, 합동, 외주 등 구체적으로
	- 월간 생산(가능)량 : 월()
	○ 판매 실적
- 판매소 이름 :	
- 판매소 위치 :	
- 월간 판매량 : 월()	
상품화 계획 (상품화 실적이 없을 경우)	
작품 사진	

※ 상기 기재 사항 이외 추가기재 안됨

[별지 제2호서식]

하남시 관광기념품 지정 및 판매 계약서

「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제11조(기념품 지정 신청 및 고시 등) 규정에 따라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기념품 지정 업체(이하 “업체”라 한다)는 하남시 관광기념품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하남시 관광기념품 지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시가 “구매자”가 되고, 업체가 “제작자(공급자)”가 되어 하남시 기념품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간) 시와 업체는 제13조(지정 취소 등)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정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 단, 계약만료일까지 상호간의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지정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조(지정의 해제 등)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업체에 대한 지정을 중도 해제 할 수 있다.

1. 「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제13조(지정 취소 등)에 해당하는 경우
2. 본 계약서상의 내용을 업체가 위반 한 경우
3. 기타 시가 업체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정의 해제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판매 및 홍보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행정지원) ① 하남시 기념품 지정을 받은 물품의 판매와 홍보를 위해 시는 적극 지원해야한다.

② 하남시 기념품 지정을 통한 행정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하남시 기념품 지정 상품의 지적소유권은 제작자에게 귀속

2. 지정 기념품 구입

※ 단, 하남시-업체 별도 계약체결 후, 예산의 범위 내 구입 가능한 경우

3. 하남시 공식사이트, 기념품책자 등에 상품정보 게시 및 상품홍보 지원

4. 대규모 박람회 등 전시·홍보 지원

5. 관내 관광안내소 등에 제품 홍보 전시 기회 제공

6. 지정 기념품 판로개척 지원(관내 운영 기념품점 입점·판매 지원 등)

※ 단, 위탁판매점-업체 별도 계약체결

제5조(의무) ① 시는 업체가 공급한 『 』 등 제작품에 대하여 하남시 기념품 직영판매소에 공급하여 판매한다.

② 업체는 『 』 등 제작품을 시가 요청한 수량만큼 제작·공급한다.

③ 업체는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원자재 인상 또는 인하 등의 원인으로 납품가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원가 상승(하락)을 비교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에 문서로 제출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기념품의 저작권, 상품권 등 권리 분쟁이 있을시 업체가 모두 책임진다.

⑤ 기타 기념품과 관련한 품질관리 등 민원발생시 업체가 모두 책임을 지고 제반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기간 및 대금정산) ① 본 제품의 판매기간은 납품일로부터 계약서상의 지정기간을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한 물품의 대금정산은 물품납품·구입 시 시가 업체에게 지급한다.

제7조(물품교환 등) ① 시는 업체로부터 납품된 물품의 하자, 파손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교환 또는 반품 시에는 10일 이내에 교환하도록 한다.

③ 지정 중도 해제 시, 납품한 물품의 재고는 업체로부터 환불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 하에 재고 처리방식을 정할 수 있다.

제8조(계약효력발생) 본 계약은 시와 업체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기타) ①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본 계약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업체가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시가 관할하는 재판법원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시와 업체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하남시 : 하 남 시 장 (인)

관광기념품 지정 업체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별지 제4호서식]

위탁판매계약서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이하 “판매점”이라 한다)은 하남시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기본원칙) 시와 판매점은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내용) 시는 하남시 관광기념품(이하 “기념품”이라 한다) 판매를 판매점에게 위탁한다.

제3조(기념품 주문) 판매점은 기념품 주문 시 시가 납품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문하도록 한다.

제4조(기념품 대금납부) ① 판매점이 시에게 기념품을 주문 시, 시는 기념품을 판매점에게 납품한다.

② 판매점은 기념품을 공급받을 때 물품대금을 지급한다.

제5조(물품교환 및 반품) ① 판매점은 납품된 물품의 파훼손 등 사유로 시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시, 기념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물품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위적 파손이나 시관 견본용으로 파훼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② 판매점은 계약기간 동안 판매실적이 없는 기념품에 대하여 구매 물

량의 50% 범위 내에서 시와 협의 후 반품할 수 있다.

③ 판매점과 소비자의 관계에 대하여 기타 세부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를 따른다.

제6조(기념품 수령증) 판매점은 시로부터 기념품을 납품 받았을 때에는 물품의 검사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념품수령증(별지 제8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판매) 판매점은 시가 정한 판매가격(소비자 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등) 시는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품 판매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료의 제출을 판매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변경) 위탁판매계약내용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나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계약기간) 본 위탁판매계약은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허가부서 발급)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쌍방 당사자가 모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시는 판매점에 대한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 취소 등 판매점 운영의 중단 사유 발생 시 기념품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시와 판매점은 본 계약서 및 본 사업 진행 중 취득한 모든

[별지 제9호서식]

문서번호 : 제 호

기 념 품 출 고 증

아래의 물품을 정히 출고합니다.

년 월 일

품 명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합 계			원	

납 품 자 : ○○○ 담 당 자 인

수 령 자 : 위탁판매점 대표 인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제3조제2항, 제5조, 제11조제4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기념품 공모전 심의위원 수당,시상금 및 입상작품 구입
- 기념품 지정위원회 운영시 심의위원 수당 지급
- 관광기념품 직영 또는 위탁판매시 관광기념품으로 지정된 상품 구입

2. 비용추계서 미첨부 근거 규정

-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관계법령 발췌서

「관광진흥법」

[시행 2020.12.10.] [법률 제17389호, 2020.6.9., 일부개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 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 제1항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 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2. 3.>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제정) 2019.07.12 조례 제3930호
(일부개정) 2021.01.07 조례 제4119호 수원시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21.05.12 조례 제4165호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관광 진흥과 관광기념품의 다양화를 위해 관광기념품의 개발·관리 및 판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기념품” (이하 “기념품” 이라 한다)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홍보할 목적으로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지정하거나 제작·구입하여 판매하는 기념품을 말한다.
2. “기념품 직영판매점” (이하 “직영판매점” 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판매점을 말한다.
3. “기념품 위탁판매점” (이하 “위탁판매점” 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위탁판매계약을 통해 지정한 판매점을 말한다.

제3조(기념품 공모전 등)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관광객 방문 활성화와 수원시 관광 진흥을 위하여 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하고, 이에 따른 기념품 제작 및 판매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념품 제작 및 판매관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기념품 공모전 운

영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4조(기념품 지정) ① 시장은 기념품 다양화를 위하여 기념품 공모전과는 별도로,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이 개발 및 제작하는 기념품을 수원시 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장 기념품 지정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수원시 기념품 지정에 필요한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수원시 관광기념품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의 수는 총 재적위원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념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나. 기념품 관련 위탁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인의 소속 직원

다. 관광학과, 디자인학과 등 관련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자

라. 공예, 디자인, 마케팅 등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기념품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4. 제7조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직무대만, 품의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분기별로 위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수원시 기념품 지정에 관한 사항
2. 수원시 기념품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3. 기념품 중 판매가 저조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상품 제외, 폐기 등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4. 기념품 특별할인 판매 행사 결정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념품 지정을 할 때 별표1의 수원시 기념품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다.

⑤ 기념품 공모전 심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은 기념품 지정위원회의 구성으로 같음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과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기념품 지정 등

제14조(기념품 지정 신청) ① 제4조에 따라 수원시 기념품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기념품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한다.

제15조(지정의 고시 및 효력) 시장은 기념품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한 제작품에 대해서는 수원시 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원할 경우 계약서(별지 제2호서식) 체결을 통해 판매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지정 이후에도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

의 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개선 또는 시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지정 등의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품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

1. 해당 기념품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3.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별표1의 수원시 기념품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에서 기념품 지정 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5. 기타 시장이 수원시 기념품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해제를 할 경우에는 판매 및 홍보 등 제작자와 맺은 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기념품의 직영 및 위탁판매

제18조(기념품 직영 판매) ① 시장은 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영판매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관광객 방문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주변 시설을 중심으로 시의 관광홍보 및 기념품의 적극적인 판매가 가능한 장소인 경우

2.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직영판매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직영판매점은 시의 직원이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직영판매점이 위치한 기관의 직원이 관리 및 운영 할 수 있다.

제19조(기념품 판매점 지정 등) ① 시장은 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판매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판매점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위탁판매 계약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점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위탁판매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 취소 등 위탁판매점 운영의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폐업 신청을 하는 경우(별지 제5호서식)

제5장 기념품의 관리 및 판매운영 등

제20조(기념품 교환 및 환불) ① 위탁판매점은 납품된 물품의 파·훼손 등 사유로 시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념품 수령일로부터 10

일 이내 물품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판매점과 소비자와의 분쟁에 대하여 기타 세부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를 따른다.

제21조(관측활동 등) ① 시는 기념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측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관측활동에 필요한 기념품(이하 “관측용 기념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관측활동 시 별표2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 무상제공을 할 수 있고, 관측용 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관측용 기념품 수불대장(별지 제 6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기념품 가격 및 판매수입금 관리) ① 시는 기념품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의 공급(제작)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작단가, 판매가격 등을 정한다.

② 판매점은 1개월 단위로 다음달 5일까지 시가 지정한 방법(관광과 기념품 판매계좌 입금)에 의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01.07)

③ 시는 매달 판매점의 판매수입금을 합산해 시 세외수입계좌에 납입한다.

제23조(기념품 보관관리 및 대장작성 등) ① 판매점은 기념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영판매점은 기념품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매월 판매용 기념품 관리

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수불사항을 작성·관리해야한다.

③ 직영판매점은 기념품의 정확한 판매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1회 재고 조사를 실시하고 15일 이내에 결과를 시에 보고해야한다.

④ 판매점이 자체 재고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시와 공동으로 재고조사를 할 수 있다.

제24조(기념품의 폐기) ① 시는 보관·전시·진열 중에 파손 또는 변질 등으로 인하여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기념품은 폐기할 수 있다.

② 기념품의 폐기에 대하여는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5조(위탁) ① 기념품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념품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9.07.12 조례 제39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매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지정된 기념품 판매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지정된 판매점으로 본다. 다만, 이미 설치된

위탁판매점의 경우에는 위탁판매계약서(별지 제4호서식)의 제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2021.01.07 조례 제4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내용생략)

⑫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⑬ ~ (115) (내용생략)

[별표 1]

수원시 관광기념품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제10조 관련)

1. “수원시 관광기념품” 지정 분야

	분 야	내 용
1	전통기념품	한국적 고유의 색채를 보유하고 수원화성 등 수원의 전통문화 유산을 계승하는 기념품
2	현대기념품	현대적 디자인의 실용성이 강조된 기념품

2. “수원시 관광기념품” 지정 요건

- 수원을 연상시킬 수 있는 실용적이고 상품성이 우수한 관광기념품
- 수원의 유·무형 자산을 모티브로 현대적 디자인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
- 민·공예품, 공산품, 녹색상품, 패션잡화류(문구, 팬시, 의류, 인형), 생활용품 등 국내외 관광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모든 관광상품
 - ※ 단, 시민의 건강과 관련되어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농·수·축·임산물 가공품 등 먹거리는 제외
- 양산 가능한 제품만을 대상
- 가격이 적정하고, 보관·운반이 용이하여 관광기념품으로의 상품화가 가능한 제품
 - ☞ 가격의 적정 수준 : 시중유사제품 판매가격과 비슷하여 소비자기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제작원가 10만원 이상의 고가상품 제한
 - ☞ 개별 제품 크기 가로30cm x 세로30cm x 높이30cm 이내

3. 지정 허가 취소 대상

- 국내외에 이미 상품화된 작품의 유사작품 및 모조품
- 작품설명서, 가격표 및 포장 등이 세트화 되지 않은 작품
- 타 공모전 등에 출품하여 입상한 작품

- 로고, 엠브럼, 캐릭터 등 사용으로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제품
- 지정 허가 후에도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밝혀질 경우 지정 허가 취소

4. 수원시 관광기념품 지정 심사기준

- 실용성 및 홍보성에 대한 심사 비중 제고
- 재적위원 수 3분의 2 이상이 배점 100점 중 80점 이상을 책정할 경우 해당상품을 수원시 관광기념품으로 지정

심사항목	배 점		평 가 사 항
	배 점	배 점	
상 징 성	2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의 상징, 도시브랜드 이미지 구현성 ▷ 수원의 지역적, 문화적 특성 등 반영 여부
시 장 성	50	15	대중성(상품 트렌드, 판매 가능성)
		15	가격 적정성
		20	실용성(상품의 기능성, 휴대성 및 활용가능성)
심 미 성	10	10	구매동기를 유발하는 조형성
창 의 성	10	10	독창성 및 아이디어의 참신성
작품완성도	10	10	내구성 및 마감처리의 정교성
합 계	100		

[별표 2]

관측활동 시 기념품 무상제공의 범위(제19조 관련)

1. 설명회, 박람회 등에 참석하는 관광객 등의 관계자
2. 관광 업무 등 시 전반 업무추진을 위하여 초청한 국내·외빈
3. 방송매체 홍보지원
4. 위탁판매점에 관측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진열대용)
5. 관광 팸투어 초청 이벤트, 관광 홈페이지 및 SNS 채널 등을 통한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
6.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급대상은 행사관계자로 제한하되 제공대상 명단을 첨부한다.

제품설명 및 상품화실적

제품명(국문)	
제품명(영문)	
제품 설명	※ 작품의 소개 자료로 활용할 내용이오니 작가의 제작의도, 작품의 특징, 참고사항, 작품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등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화 실적 (상품화 실적이 있을 경우)	○ 제품 생산현황
	- 생산주체 및 방식 : 직접, 합동, 외주 등 구체적으로
	- 월간 생산(가능)량 : 월()
	○ 판매 실적
- 판매소 이름 :	
- 판매소 위치 :	
- 월간 판매량 : 월()	
상품화 계획 (상품화 실적이 없을 경우)	
작품 사진	

※ 상기 기재 사항 이외 추가기재 안됨

[별지 제2호서식]

수원시 관광기념품 지정 및 판매 계약서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 · 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제15조(지정의 고시 및 효력) 규정에 따라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와 기념품 지정 업체(이하 “업체” 라 한다)는 수원시 관광기념품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수원시 관광기념품 지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시가 “구매자”가 되고, 업체가 “제작자(공급자)”가 되어 수원시 기념품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간) 시와 업체는 제17조(지정 등의 해제)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정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 단, 만료 후 상호간의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조(지정의 해제 등)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업체에 대한 지정을 중도 해제 할 수 있다.

1.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 · 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제17조(지정 등의 해제)에 해당하는 경우
2. 본 계약서상의 내용을 업체가 위반 한 경우
3. 기타 시가 업체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정의 해제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판매 및 홍보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물품교환 등) ① 시는 업체로부터 납품된 물품의 하자, 파손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교환 또는 반품 시에는 10일 이내에 교환하도록 한다.

③ 지정 중도 해제 시, 납품한 물품의 재고는 업체로부터 환불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 하에 재고 처리방식을 정할 수 있다.

제8조(계약효력발생) 본 계약은 시와 업체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기타) ①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본 계약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업체가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시가 관할하는 재판법원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시와 업체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수원시 : 수 원 시 장 (인)

관광기념품 지정 업체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별지 제4호서식]

위탁판매계약서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이하 “판매점”이라 한다)은 수원시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기본원칙) 시와 판매점은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내용) 시는 수원시 관광기념품(이하 “기념품”이라 한다) 판매를 판매점에게 위탁한다.

제3조(기념품 주문) 판매점은 기념품 주문 시 시가 납품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문하도록 한다.

제4조(기념품 대금납부) ① 판매점이 시에게 기념품을 주문 시, 시는 기념품을 판매점에게 납품한다.

② 판매점은 기념품을 공급받을 때 물품대금을 지급한다.

제5조(물품교환 및 반품) ① 판매점은 납품된 물품의 파훼손 등 사유로 시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시, 기념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물품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위적 파손이나 시관 견본용으로 파훼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② 판매점은 계약기간 동안 판매실적이 없는 기념품에 대하여 구매 물

량의 50% 범위 내에서 시와 협의 후 반품할 수 있다.

③ 판매점과 소비자의 관계에 대하여 기타 세부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를 따른다.

제6조(기념품 수령증) 판매점은 시로부터 기념품을 납품 받았을 때에는 물품의 검사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념품수령증(별지 제8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판매) 판매점은 시가 정한 판매가격(소비자 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등) 시는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품 판매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료의 제출을 판매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변경) 위탁판매계약내용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나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계약기간) 본 위탁판매계약은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허가부서 발급)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쌍방 당사자가 모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시는 판매점에 대한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 취소 등 판매점 운영의 중단 사유 발생 시 기념품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시와 판매점은 본 계약서 및 본 사업 진행 중 취득한 모든

